

# 송우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송우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제1항 제7호 규정과 제 31조 관련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생활 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 생활

### 제1절 교내생활

제5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과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학교소개-학생생활인권규정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②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한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7일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 【교우관계】** 학교 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용의복장】**

①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한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신발은 실내화와 실외화로 구분하여 신는다.

#### **제15조 【학급 내 봉사활동】**

- ①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제16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이용하여 취미와 적성을 기를 수 있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 【기타 교내생활】**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5.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 **제2절 교외생활**

#### **제19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지킨다.
3. 교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4.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6.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20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21조 【참정권 보장】** ① 만18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절 정보통신

**제22조 【사이버 생활】** ① 건전한 사이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3조 【통신기기 관리】** ①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으며 규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1. 교육활동 시간에는 전원을 끈다. 단 필요시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규제범위를 정할 시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며, 학생자치회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본인의 허락 없이 동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을 금지하며 유포 시 책임을 진다.

## 제4절 학생자치회

제24조 【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5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금지활동】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 【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28조 【학생회 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지도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협의)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9조 【학급회 임원】 학급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둔다.
2. 학급학생자치회 부서는 학급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직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30조 【직무 및 선출】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3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1조 【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자치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자치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자치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학생자치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자치회 심의·결정사항을 발의한다.

### 제3장 학생생활 지도

**제32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수련활동, 현장학습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봉사단체 및 학부모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3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생활 교육한다.

**제35조 【학생의 소지품 검사】**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①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 ② 학생이 소지품 검사를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 ③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사가 실시하며, 교사외의 학생이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없다.

**제36조 【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생활지도 절차】** 생활지도는 단계별 지도를 하며 1단계(훈육)→2단계(상담)→3단계(학부모 상담) 순으로 지도한다.

**제38조 【징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39조 【학생상담】**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0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4장 장애 인권

### 제1절 총 칙

**제4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42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장애학생의 인권

**제43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44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4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절 장애인권교육

**제47조 【장애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장애 이해) 및 장애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에 대한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 제4장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1절 목적 및 적용근거

**제48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 【적용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50조 【생활교육원칙】** 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생활교육은 교육적인 훈육의 방법으로 한다.

### 제2절 구성 및 운영

**제51조 【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2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53조 【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 심의(교감, 생활인권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생활지도담당)

**제5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5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6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5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58조 【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9조 【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할 수 있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학급담임과 동학년 교사, 생활인권부가 협조하여 지도한다.

\*학교 내의 봉사 예-학교환경 미화작업,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반성문, 편지쓰기)

##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간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4. 사회봉사의 예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4.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 생활교육처분

1. 생활교육 처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사회봉사이상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생활인권부에서 기안, 결재한다.

**제60조 【생활교육의 기준】** 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생활교육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 또는 사행성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학생	○	○	○	
2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3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5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7	학교에서 음란물을 배포한 학생	○	○	○	○
8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9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0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
11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2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13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14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15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6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17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8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19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61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재심의 신청】**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63조 【재심청구】**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재심 청구 절차>

1. (이의제기 단계) 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함.
2. (재심의 여부 심의)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 심의함.
3. (재심의 결정)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함.
4. (재심의)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함. 이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내려질 수 없음.
5.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통보, 선보 시행의 절차를 따르게 됨.

### 제4절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통지

**제64조 【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 【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지 : 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

**제66조 【생활교육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주의해야 한다.

**제67조 【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평가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 학습, 수학여행 등) 및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8조 【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 제6장 규정의 개정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제69조 【구성】

- ①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원 대표(3명), 학생 대표(3명), 학부모 대표(3명 2명), 전문가 위원(1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제70조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71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및 제·개정 사유 발생 시 소집한다.

**제73조 【제정 및 개정 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관한 절차를 따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 및 개정한다.

**제74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75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21년 7월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공포한 날(7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